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사업장 감독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 사업장 감독의 종류, 감독 계획 수립, 결과 조치 등 사업장 감독에 관한 업무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신고사건의 제기·조사·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 원칙을 구체화함(안 제20조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제32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사전협의된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등).

II. 검토의견

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면서,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 및 업무 절차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16호)」 등에 산재되어 있는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관할구역의 범위에서는 지방정부 소속 지방공무원인 “지방노동감독관”도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행사¹⁾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안 제28조제5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철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 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지방노동감독관) ① ~ ④ (생략)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지방노동감독관) ① ~ ④ (생략)

1) 안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지방노동감독관) ① 이 법 및 제2조제2호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제32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사전협의된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임 전에 수임기관의 위임사무 수행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지방노동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와 관할 구역 내에서 이 법에 따른 중앙노동감독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위임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⑤ -----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한편, 사업장 감독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1),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9),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6)]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위 안건²⁾의 심사시 동 제정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음.

그 밖에 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주서본 참조).

Ⅲ. 관계기관 의견: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안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신분인 지방노동감독관을 임면하려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 이 자치단체장의 인사운영 독립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전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038)은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2024년 12월 6일)에 상정 후 계류 중에 있고,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안(2209781)의 경우 2025년 4월 15일에 회부되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25년 11월 26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으며,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안(2213929) 및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안(2214366)의 경우 각각 2025년 11월 6일, 2025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중임.

협의'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조직·예산 확보 책무가 있음을 명시한 규정이 위임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등³⁾을 제시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서에 반영하였음.

개 정 안	수정의견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 산업재해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 사항을 준수하고, <u>인력·조직·예산을 적절하게 확보하여야 한다.</u>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② ----- ----- ----- ----- ----- ----- <u>인력·조직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u>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지방노동감독관) ①·② (생략) ③ 지방노동감독관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감독관”은 “지방노동감독관”으로 보며, 시·도지사는 지방노동감독관을 임면하려는 때에는 <u>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지방노동감독관) ①·② (생략) ③ ----- ----- ----- ----- ----- <u>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고,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u>

3) 그 밖에 국가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 감독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수정의견(경상남도), 각 시·도에 국가공무원을 두도록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충청북도)이 제시되었음.

또한, 행정안전부는 시·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안 제33조)에 대하여 현행법상 규정⁴⁾을 활용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불필요함을 근거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⁵⁾하였고, 고용노동부는 행정안전부와 합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주서에 반영하였으며,

개 정 안	수정의견
제33조(시·도에 두는 국가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위임사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에 고용노동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시·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및 수행 업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공무원 등의 파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

노동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규정(안 제38조제5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직제에 관한 사항임을 근거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서에 반영하였음.⁶⁾

개 정 안	수정의견
제38조(노동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 ④ (생략)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노동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 ④ (생략) <삭제>

4)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인사고료) 및 제32조의4(파견근무)에 근거한 국가-지자체 교류·파견, 각 지방고용노동청과 시·도 간 업무협조 등

5) 충청북도에서도 필요시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규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6) 행정안전부는 노동감독관 교육·훈련 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36조(노동감독관 전

한편, 법무부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국제노동기구(ILO)협약⁷⁾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감독관의 수사업무에 대하여 중앙정부 소속인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철저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조사 또는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 등에게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제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중앙노동감독관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전문위원 이 세 진)

문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부조직법」 제4조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는 직제(대통령령)로 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정하였음.

7) 1992년 비준한 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81호) 제4조는 근로감독관은 회원국의 행정관행에 일치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도록 규정함.